

# 공정 거래법

## 소비자 정보 표준 규정 및 상품 안전 표준 규정의 집행

이 브로셔는 단순한 지침일뿐 관련된 표준 및 규정에 포함된 세부사항의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상품 안전 표준이나 소비자 정보 표준이 적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면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관련 표준을 충족시키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소비자 정보 표준 규정은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일정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상품 안전 표준 규정은 특정 상품에 대한 의무적인 안전 표준을 정합니다.

###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공정 거래법에 의하면 소비자 정보 표준 또는 상품 안전 표준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을 동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공급하거나, 공급하기로 제안, 또는 광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법을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초래되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무 위원회는 당사자를 공정 거래법 위반으로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인 경우 최고 \$200,000, 개인인 경우에는 최고 \$6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정보 표준 규정

상무 위원회는 다음의 소비자 정보 표준을 권장합니다:

### 유의사항 라벨

소비자정보 표준규정2000(유의사항 라벨)에 의하면 대부분의 섬유 신상품은 “AS/NZS 1957:1998: 섬유 - 유의사항 라벨”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표준에서는 드라이클리닝 및 세탁 등 섬유상품의 정확한 취급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라벨에 사용되어야 할 단어, 문구, 심벌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류, 가정용 섬유, 가구, 걸침을 댄 소파류, 침구, 매트레스 및 침대 받침
- 길이로 재서 파는 섬유 및 방사
-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코팅이 된 섬유
- 스웨이드 가죽, 통가죽, 구두용 가죽, 모피

이 표준에 의하면 유의사항 라벨은 영어로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고 상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원산지 라벨

소비자 정보 표준규정 1992 (원산지 - 의류 및 신발)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의류 및 신발은 제조 또는 생산국을 나타내는 라벨을 붙이거나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라벨이나 표시는 영어로 해야 하며 글자의 크기가 1.5mm 이상으로 명료해야 합니다.
- 의류에는 예상 구매자가 볼 수 있도록 항구적인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각 신발에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인쇄, 스텐실인, 낙인, 또는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구성, 구조 등의 이유로 원산지 정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산지 정보가 포장 표면, 부대 라벨, 또는 팜프렛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중고 의류나 중고 신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섬유 성분표시 라벨

소비자정보 표준규정 2000(섬유 성분표시 라벨)에 의하면 대부분의 섬유 신상품은 “AS/NZS 2622:1996: 섬유상품 - 섬유 성분표시 라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표준은 섬유성분을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과 상품의 라벨표시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성분을 평가하는 방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카페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섬유상품에 적용되나 중고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고 차량의 정보표시

소비자정보 표준규정 2003(중고자동차)에서는 판매를 위해 내놓거나 전시하는 중고자동차에 공급자정보(SIN), 즉 창문카드의 계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동차상이나 개인들이 자동차 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위해 내놓거나 전시하는 중고자동차들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개인판매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안전 표준규정

상무 위원회는 다음의 상품 안전 표준을 권장합니다:

### 유아용 보행기

상품안전 표준규정 2001 및 이의 개정 규정(유아용 보행기)은 “미국 안전 표준 - 유아용 보행기 표준 소비자 안전기준 (ASTM F977-03)”의 특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 표준은 신품은 물론 중고 유아용 보행기를 공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안전 표준은 보행기에 탄 어린이가 받을 수 있는 상해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표준은 보행기의 안전성, 계단적용 성능, 착석 시스템, 접는 기능 및 안전사용 정보와 관련된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잠옷

상품안전 표준규정 2005(어린이 잠옷 및 제한적 화재위험을 지닌 일부 어린이 평상복)은 어린이 잠옷 및 일부 평상복의 제조, 유통,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업자가 “AS/NZS 1249:2003: 어린이 잠옷 및 제한적 화재 위험을 지닌 일부 어린이 평상복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 표준은 잠옷으로 사용될 모든 의류는 화재의 위험이 적도록 디자인이 되도록, 또는 인화성이 적은 섬유를 사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안전 표준은 00-14규격의 어린이 용 잠옷에 적용됩니다.

### 어린이 장난감

상품안전 표준규정 2005(어린이 장난감)는 36개월 및 그 이하의 어린이 용 장난감의 제조, 유통, 소매와 관련된 모든 사업자가 “AS/NZS ISO 8124:2002 장난감 안전 - 1부: 기계적, 물리적 성질과 관련된 안전”의 특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 표준의 적용 대상은 판매, 교환, 대여, 임차, 할부판매 되는 모든 장난감이며 ‘사은품’ 장난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인 간에 거래된 중고 장난감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안전 표준에 의하면 장난감은:

- 삼키거나 흡입했을 때 위험한 크기여서는 안됩니다.



-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또는 합리적 수준의 남용이 있더라도 작은 부품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삼키거나 흡입될 위험이 있도록 디자인되어서는 안됩니다.

## 담배 라이터

상품안전 표준규정 1998(담배 라이터)은 “미국 표준 CFR 16 Part 1210.4(웹사이트 [www.access.gpo.gov](http://www.access.gpo.gov)참조) 및 ISO 9994:1995의 일반 안전요건”에서 정하는 어린이 저항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회용 재충전 저가 담배 라이터(통관 기준 NZ\$3.5 이하)를 수입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수입상은 수입상품의 요건충족 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무위원회에서 요구할 경우 소매상은 10일 이내에 수입상이 제공하는 요건충족 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유아용 침대

상품안전 표준규정 2005(유아용 침대)는 “AS/NZS 2172:2003(가정 유아용 침대 - 안전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 표준은 가정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신제품 또는 중고 유아용 침대를 공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중고 유아용 침대는 내구성, 강도시험, 포장 및 라벨 요건에 대해서 일부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이 표준은 접는 침대, 이동침대, 흔들침대 및 유모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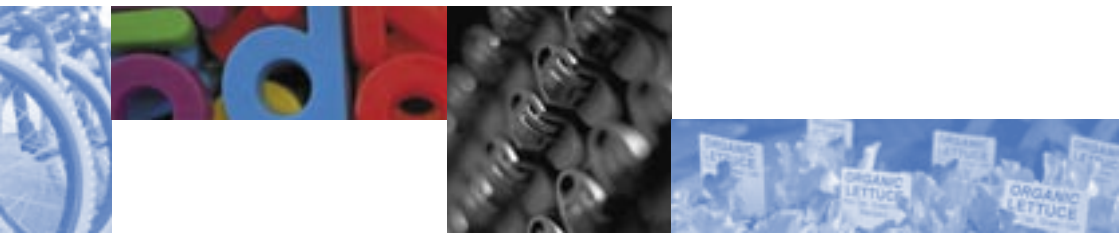
이 안전 표준은 유아용 침대의 일반적인 구조, 디자인 및 라벨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제품 유아용 침대는 특정 안전검사에 합격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페달 자전거

상품안전 표준규정 2000(페달 자전거)은 “AS/NZS 1927:1998(페달 자전거 - 안전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신규 페달자전거를 공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안전 표준은 차축거리(전방 및 후방 축의 중심부 사이를 수평으로 잰 거리)가 640mm 또는 그 이상인 대부분의 자전거와 자전거 반제품들을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용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이 표준은 일정한 디자인, 성능 및 라벨 요건을 규정하고, 판매되는 신제품 자전거나 자전거 반제품에는 반드시 사용자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디에서 추가 정보를 구할 수 있나?

소비자 정보, 표준규정 및 상품안전 표준규정은 일부 서점이나 뉴질랜드 법규 웹사이트 [www.legislation.govt.nz](http://www.legislation.govt.nz)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들에 언급된 표준들은 0800 STANDARDS (0800 782 632)로 연락하여 뉴질랜드 표준협회(Standards New Zealand)에서 구하거나 웹사이트 [www.standards.co.nz](http://www.standards.co.nz)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 거래법 또는 이 브로서에 언급되는 표준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상무위원회의 웹 사이트 [www.comcom.govt.nz](http://www.comcom.govt.nz)를 방문하여 참조하십시오.

## 상무위원회 연락처

소비자 필수정보 미제공, 상품안전 표준규정 위반, 불공정 또는 오도 상행위, 또는 반경쟁 행위 등에 대한 제보는 아래의 상무위원회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800 94 3600을 이용하여 제보 접수 센터 (Contact Centre)로 전화 주십시오.
- 다음 주소로 서신을 보내 주십시오.  
Contact Centre  
Commerce Commission  
PO Box 2351  
Wellington
- 또는 [contact@comcom.govt.nz](mailto:contact@comcom.govt.nz)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영어가 귀하의 모국어가 아니더라도 상무위원회는 랭귀지 라인(Language Line)의 전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ISBN - 1-86945-238-0

Korean. Published February 2006.

## 면책 조항

이 출판물의 정보는 단순한 안내일 뿐이며, 법적 조언의 대체물이 아니며, 해당 법률에 대한 참조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 공정 거래법

소비자 정보 표준 규정 및  
상품 안전 표준 규정의 집행



COMMERCE COMMISSION

NEW ZEALAND

##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의 역할

상무위원회는 여러 규제 법규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정 거래법이 있으며 이 법에 근거한 각종 규정에서 정한 여러 표준들을 관장합니다.

일반인들이 공정 거래법에서 정한 자기들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 수 있도록 계도하고 법규 집행에 대한 그들의 건전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상무위원회는 일반인에게 동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상무위원회는 일반 대중의 신고로, 또는 자체 감시 활동의 결과로 알게 되는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무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그들의 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상무위원회의 견해로 보아 업체의 어떤 행위가 공정 거래법을 위반할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고, 공정 거래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 상무위원회의 견해로 보아 업체의 어떤 행위가 공정 거래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이를 공식적으로 경고합니다.
- 상무위원회의 견해로 보아 어떤 행위가 공정 거래법에 저촉되었을 때, 상무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해당 업체의 시정 약속을 받아 냅니다. 이 약속에는 해당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시인하는 것과, 그들의 영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보상을 해 준다던가, 시정 광고를 한다던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무위원회의 견해로 보아 기소하는 것이 혐의가 있는 특정 위반 행위를 처리하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법원은 행위금지, 벌금, 보상명령, 정보공개 명령, 시정광고 등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